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본 규칙안은 2022년 01월 13일 박찬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22년 0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적용범위(안 제2조)
-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다. 소양교육 의무 및 현지활동 등(안 제5조 ~ 제6조)
- 라.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사후관리(안 제7조, 제8조)
- 마.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규칙안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소양교육 의무 및 현지활동 등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사후관리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참고자료: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